

2019년도 제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2. 14.(목요일)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전용준(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3건(안건번호 제2019-807호~878호)
 - 회의결과 :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되,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사진 및 인물사진 게시물 1개 안건(제2019-807호)은 부결하고, '참여코드'가 필요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 불법복제물 위치 정보 게시물 1개 안건(제2019-808호)도 부결하며, 불법복제물 공유를 위해 개설된 오픈채팅방 내 불법복제물 1개 안건(제2019-809호)은 전체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소개하는 블로그 게시물 1개 안건(제2019-810호)은 부결하기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8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견 없으며,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성원영 전문위원 : '네이버밴드'(온라인서비스명) 공개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B 위원 : 해당 온라인서비스명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견 없음을 확인하며 전부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전번호 제2019-807호~878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123건임
우선 안전번호 제2019-807호는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사진 및 인물사진 게시물에 대한 사안이고, 안전번호 제2019-808호는 '참여코드'가 필요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 불법복제물 위치 정보 게시물에 대한 사안이며, 안전번호 제2019-809호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위해 개설된 오픈채팅방 내 불법복제물 전송 게시물에 대한 사안이고, 안전번호 제2019-810호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소개하는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사안이고, 마지막으로 안전번호 제2019-811~878호는 웹하드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단순 불법복제물에 대한 사안임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807호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사진 및 인물사진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과 해당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전문위원은 2019. 2. 8. 게시물 내 사진 촬영자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게시자 회사의 법무팀과 전화통화를 하였음
얼마 후 게시자 회사 담당자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였다고 전화로 알려왔음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 내 인물사진 및 제품사진에 대하여 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불명확하며,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서만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807호는 사진의 저작물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부결하기로 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808호 ‘참여코드’가 필요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 불법복제물 위치정보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이 제출한 채팅방 캡처 화면을 보여주면서) 본 건 게시물은 민원인이 보호원에 신고하였는데, 특정 게임에 관한 정보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중 한 명이 해외 클라우드서비스 내 불법복제물 링크 주소를 공유한 사안임 (링크 주소를 입력하면 나오는 불법복제물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해외 클라우드서비스 내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A 위원 : 통신의 비밀을 고려하면 행정조치의 제한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침해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행정조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됨
해당 오픈채팅방이 주로 게임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개설되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불법복제물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불법복제물 공유가 지속적으로 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해당 채팅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여코드’가 필요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B 위원 : 신고인이 제출한 캡처 사진을 보면 주로 게임 관련 대화가 이루어지는 중에 우연한 기회에 해당 불법복제물이 공유된 것으로 판단됨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공간에 공권력이 개입하게 되면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사안과 같이 우연한 기회에 불법복제물등이 공유된 사안에서는 공권력 발동이 자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현재 증거만으로는 해당 오픈채팅방의 성격이 개인 친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비공개 채팅방이이며, 우연한 기회에 불법복제물이 공유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보장 등 헌법상 기본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조치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809호 불법복제물 공유를 위해 개설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 불법복제물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채증 자료와 해당 오픈채팅방을 보여주면서) 약 5개월간 운영되었고 현재 500명이 넘는 이용자가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데, 음원파일 요청과 무관한 대화를 할 경우 강제로 퇴장당하며 음원파일 요청 및 제공에 관한 규칙이 채팅방에 공지되어 있음
- B 위원 : 채팅방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 음원 공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이 개설된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존

재한다고 판단됨

- A 위원 : 해당 오픈채팅방은 누구나 익명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불법 음원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권고 필요성은 존재하나, 이와 같은 오픈 채팅방의 경우에는 채팅방 메인 주소 외에 대화방 참여자가 제공한 불법복제물 주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대화방 전체가 삭제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할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B 위원 : 표현의 자유, 통신의 비밀 외에 우리 분과에서 생각하지 못한 다른 기본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대한 최초 심의 사례이므로 헌법상 기본권 위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추후 분과위원회간 통일적 판단을 위하여 전체심의위원회에 상정함이 타당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체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810호 해외 저작권침해 불법사이트를 소개하는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게시물과 게시물 내 주소를 입력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본 건 게시물은 민원인이 보호원에 신고하였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사이트 내 개별 불법복제물로의 접속을 차단하여 현재 불법복제물이 보이지 않는 상태임

- B 위원 : 개인 블로그 내에 사이트의 메인화면 주소만을 게재하고, 링크 등 해당 사이트에 연결되는 조치 등을 해두고 있지 않은 이러한 경우까지 시정권고를 하게 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결함이 타당함
- A 위원 : 개인 블로그 내에 주소가 공개된 해당 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이미 접속 차단되어 시정조치 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부결 의견임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810호에 대하여 부결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811~878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 안전번호 제2019-811~878호 게시물은 모두 원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811~878호 게시물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를 의결하기로 함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807호, 808호, 810호 게시물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며, 제2019-809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제2019-811호~878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전용준 분과위원장이 제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3. 5.

분과위원장 전용준

위원 박성호